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04. 25(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04. 07

나. 제 안 자 : 김영분, 이재병 의원 (찬성자 5인)

다. 회부일자 : 2014. 04. 07

라. 상정일자 : 2014. 04. 25(제215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 제안설명 : 서면대체
-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 질의 및 토론
-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아직은 사회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보호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 추가 및 보완하도록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

나. 주요골자

○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추가 및 보완함 (안 제7조)

○ 협의회 위원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엄수 규정을 마련 (안 제11조의2)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 추진관련 지원규정 마련 (안 제15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적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규정 마련 (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2014년 3월말 2,240명(남자 649명, 여자 1,591명)[1]에 달하는 인천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 및 보호시책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추가·보완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 제2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서도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동안 실시된 조사내용과 그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된 시책 사례의 설명이 필요하며

○ 안 제4조(지원 사업)은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북한이탈주민지원에 있어서

1)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참조(거주자 기준)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을 요구하였던 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사업 중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부터 제7조, 제11조의2 조항은 상위법령에 맞춰 지원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 안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나 안 제4조에서도 사업 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여 보조하고 있는 바, 안 제14조에서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항에서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 및 조례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진흥하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3항의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한 조항이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현재 우리시 및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사업 사례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이상철 위원>

❍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안 제15조제3항에 강제규정 있는데 넣어야 하는가?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고자 만든 조건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이용범, 류수용, 이상철, 홍성욱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지원협의회 설치)”를 “(지역협의회 설치)”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초자치단체 담당과장,”을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신 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7. 지역적응센터 지원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시책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제3조에 따른 ----------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제6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시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거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담당과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경인지방노동청의 부서책임자 2. (생략)	제6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기초자치단체 담당국장, ---------- 2.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의 취업·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1조의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생 략)	제17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생 략)	제18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